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5조·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, “250인”을 “2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2인”을 “1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 임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영 제19조제2항”을 “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영 제21조제5항제1호”를 “영 제19조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영 제21조제5항제2호”를 “영 제19조제1호의3 및 제21조제5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영 제21조제5항제3호”를 “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제4호 내지 제6호”를 “제4호부터 제6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외의 부분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, “30인”을 “3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심의”를 “실시설계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법”을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(중전의 제11조제1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”을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으로, “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”를 “수수료를 징수하되,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 수수료의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중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 절차가 진행중인 안건에 대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[별표]

건설기술심의 수수료 (조례 제13조제1항 관련)

구	분	수수료 (1건당)
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	○ 일괄입찰공사기본설계 적격심의	13,000,000원 이상
	○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	17,000,000원 미만
	○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	2,000,000원 이상 5,000,000원 미만
	○ 기타 심의사항	800,000원 이상 1,000,000원 미만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영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,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·환경성에 관한 사항
2.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 의한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
3. 영 제2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·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
4. 영 제2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
5. (생략)
6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~ 2. (생략)
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심의·자문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

④ -----

-----남은
임기-----.

제3조(기능) ①-----각 호-----
-----.

1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제1호의 각 목-----
2. 영 제19조제1호의2 및 제21조제5항제1호-----
3. 영 제19조제1호의3 및 제21조제5항제2호-----
4.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4-----

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-----

②-----각 호-----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-----

제5조(소위원회) ①-----

<p>회를 구성·운영한다.</p>	<p>-----</p>
<p>1.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 : 건설기술 심의회위원회</p>	<p>1. -----제4호부터 제6호까지----- -----</p>
<p>2. ~ 4. (생 략)</p>	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5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심의회위원회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</p>	<p>⑥ -----각 호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대안입찰공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심의</p>	<p>2. ----- 실시설계심의 -----</p>
<p>⑦ (생 략)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</p>	<p>⑧ ----- -----1명-----</p>
<p>⑨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⑨ 그 밖에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위원의 회피 및 제척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위원의 회피 및 제척) ① ---각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</p>

<p>용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심의수수료) ①시장은 <u>법</u>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<u>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</u>. 다만,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수수료는 위원회 심의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, <u>기타</u>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-----,</p> <p>제13조(심의수수료) ①-----「<u>건설기술관리법</u>」-----</p> <p>-----수수료를 징수하되, 수수료의 금액은 <u>심의내용 및 실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</u>.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,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그 밖에 수수료의</u>-----,</p>
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	